

대전지방법원 2023. 8. 17 선고 2022가단1453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2023. 8. 10.

판결 선고2023. 8. 17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이 충청남도 서천군 C 임야 545m²에 관하여 2019. 11. 15.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9. 11. 15. 접수 제13497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(主文)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, D조합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

종합하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.

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나,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

부인 외에 법률상 '항변'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.

그렇다면 결론적으로, 피고와 소외 B이 충청남도 서천군 C 임야 545m²에 관하여 2019. 11. 15.

맺은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이

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.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

장항등기소 2019. 11. 15. 접수 제13497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
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.

판사오현석

별지